

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0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12월 2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가 방송분야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민간주도의 언론으로 독립경영 하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가 2024.1.1.日 시행 예정임
- 나. 그러나 조례 시행 시기가 도래함에도 시간과 준비 부족으로 TBS 출연기관 지정해제 신청 후 지정해제시까지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 폐지 시행일을 5개월 유예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4년 6월 1일로 5개월 유예함(부칙 제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갈등관리 필요사업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: 생략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안주희 (☎2133-6442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8517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부칙 제1조 중 “2024년 1월 1일”을 “2024년 6월 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<u>2024년 1월 1일부터</u> 시행한다.	부칙 제1조(시행일) ----- <u>2024년 6월 1일</u> -----.

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 용 추 계 서

I 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: 재단 출연금

- 조례 폐지 시행일 5개월 유예에 따라 지정해제 전까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음

제4조(재단의 운영재원 등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② 재단의 시설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.

③ 시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근 거 :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
- 가격기준 : 2024년 TBS 예산편성안 및 사업계획
- 추계기간 : 2024.1.1.~2024.5.31

3. 비용추계의 결과 : 출연금 9,297,697천원

4. 자원조달 방안 : 市 출연금 및 TBS 자체수입

5. 덧붙이는 의견 : 해당 없음

6. 작성자 :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안주희(2133-6442)

II 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인 건 비 : 7,295,528천원(퇴직급여충당금, 조기희망퇴직수당 등)

※ 편성인원 기준 180명, 조기희망퇴직 112명 별도

2. 기본경비 : 664,298천원(4대 보험료)

3. 청사유지비 등 : 1,337,871천원(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등)